

군산시 고시 제2009-2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20.

군 산 시 장

1. 허가사항

피허가자	허가 연월일	목 적	장 소	면 적	허가기간
한국해양 연구원장	2009.3.1 6	해양관측 및 기상관측용 등부표설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방 약 9km 해상	706.5㎡	2009.3.16 ~ 구조물 존속시까지

군산시 고시 제2009-26호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체육시설	골프 연습장	미룡동 656-2일원	-	증)29,117	29,117	

2.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 도면 : 실음생략

3.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09-27호

고 시

군산 도시근린공원(옥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 3. .

군 산 시 장

1. 도시근린공원(옥산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옥산 공원	근린 공원	군산시 지곡동 286-5번지 일원	139,157	-	139,157	건설부고시 제525호 (1967.7.25)	군산시고시 제2008-110호 (2008. 9. 5)

2. 도시근린공원(옥산공원)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 조서

시설구분	부 지 면 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9,157	-	139,157	5,600	(증)1,822.82	7,422.82	14,550	(증)3,980.42	18,530.42	
시설면적총계	54,656	(감)455	54,201	5,600	(증)1,822.82	7,422.82	14,550	(증)3,980.42	18,530.42	
공통시설	5,825	(감)455	5,370	-	-	-	-	-	-	
조경시설	760	-	760						-	
휴양시설	288	-	288						-	
유희시설	-	-	-	-	-	-	-	-	-	
운동시설	3,145	-	3,145	-	-	-	-	-	-	
교양시설	44,000	-	44,000	5,450	(증)1,822.82	7,272.82	14,400	(증)3,980.42	18,380.42	
편익시설	638	-	638	150	-	150	150	-	150	
관리 및 기타시설	-	-	-						-	
기 타	84,501	(증)455	84,956	-	-	-	-	-	-	

3. 도시근린공원(옥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끝.

군산시 고시 제2009-29호

고 시

2009년 3월 30일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30

군 산 시 장

2009년도 제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목	예산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예산총액)	비고
계		577,335,536	0	577,335,536	
세 입	지 방 세 수 입	95,576,759	0	95,576,759	
	세 외 수 입	40,788,505	0	40,788,505	
	지 방 교 부 세	202,378,569	0	202,378,56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156,980	0	21,156,980	
	보 조 금	217,434,723	0	217,434,72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단위 : 천원)

구분	분 야	예산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예산총액)	비고
계		577,335,536	0	575,335,536	
세	일반 공공 행정	18,941,694	0	18,941,694	
	공공질서 및 안전	16,807,487	0	16,807,487	
	교 육	8,401,687	0	8,401,687	
	문 화 및 관 광	36,348,856	△16,000	36,332,856	
	환 경 보 호	64,480,280	0	64,480,280	
	사 회 복 지	152,682,883	△26,400	152,656,483	
	보 건	7,839,666	0	7,839,666	
	농림 해양 수산	58,734,510	0	58,734,510	
출	산업 및 중소기업	20,947,726	△100,000	20,847,726	
	수송 및 교통	65,176,624	0	65,176,624	
	국토 및 지역개발	28,030,186	0	28,030,186	
	예 비 비	7,042,767	146,900	7,189,667	
	기 타	91,901,170	△4,500	91,896,670	

※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

□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삭 감 액	승 인 액	삭 감 비 율
계	108,844,909	0	108,844,909	
상수도공기업	50,917,569	0	50,917,569	
하수도사업	12,251,756	0	12,251,756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3,751,354	0	3,751,354	
의료급여기금	3,653,416	0	3,653,416	
수질개선특별회계	85,400	0	85,400	
농어촌소득지원	3,188,998	0	3,188,998	
구획정리사업	3,130,136	0	3,130,136	
공영개발사업	5,918,773	0	5,918,77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1,010,000	0	1,010,000	
주 택 사 업	2,093,741	0	2,093,741	
농 공 단 지	415,431	0	415,431	
공단조성사업	99,131	0	99,131	
도시교통사업	3,549,815	0	3,549,815	
기반시설부담금	220,000	0	220,000	
발전소주변지원	6,430,000	0	6,430,000	
도 시 개 발	12,129,389	0	12,129,389	

군산시 공고 제2009-623호

공 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3.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미룡동 556-5번지 일원 및 산북동 945-3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2) 명칭 :
 -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 원 (m)	연 장 (m)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개설공사	소로2-746	8	1,360	8	1,260	10,080	
소 계						10,080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 원 (m)	연 장 (m)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삼양레미콘~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2-701	8	253	8	62	507	
	소로 2-702	8	257	8	8	296	
	소로 2-703	8	152	8	25	286	
	소로 2-704	8	100	8	96	852	
	소로 2-705	8	238	8	8	356	
	소로 3-429	6	129	6	116	810	
합 계	6개 노선	6~8	1,613	6~8	1,322	20,667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 2007. 12. 27 ~ 2010. 12. 31.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 2008. 12. ~ 201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미룡동	659-9	도	33	33	농수산부				
2	미룡동	663-2	유	43	43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3	미룡동	556-5	도	15	15	허철	군산시미룡동푸른원룸304			
4	미룡동	568-19	도	0.6	0.6	박승만	경기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15			
5	미룡동	568-19	도	0.4	0.4	박승방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 변홀타운101/801			
6	미룡동	573-4	대	83	83	강효식	회현면대정리166			
7	미룡동	577-46	전	59	59	이점례	군산시미룡동산북부향3차1118			
8	미룡동	658-2	전	9	9	박광래	서천장항읍성주리금강102/605			
9	미룡동	659-10	전	73	73	박광래	서천장항읍성주리금강102/605			
10	미룡동	663-3		16	16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11	미룡동	540-1	도	3	3	박길원				
12	미룡동	635-1	답	89	89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13	미룡동	642-4	도	11	11	서문영	군산시삼학동대우아파트101/403			
14	미룡동	644-3	도	122	122	홍공식외2				
15	미룡동	666-2	도	7	7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 변홀타운101/801			
16	미룡동	666-3	답	63	63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 변홀타운101/801			
17	미룡동	666-4	제방	30	30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 변홀타운101/801			
18	미룡동	666-5	제방	33	33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 변홀타운101/801			
19	미룡동	799-1	도	3	3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 변홀타운101/801			
20	미룡동	799-2	대	53	53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21	미룡동	802-1	도	36	36	문종구				
22	미룡동	801-1	도	23	23	홍선순				
23	미룡동	600-1	전	13	13	추상석	군산시미룡동601-1			
24	미룡동	601-2	대	17	17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25	미룡동	601-3	대	26	26	추상석	군산시미룡동601-1			
26	미룡동	602	대	5	5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27	미룡동	602-1	전	13	13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28	미룡동	802-12	답	20	20	강동환	군산시경암동671-17			
29	미룡동	572-1	도	10	10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0	미룡동	573-1	도	36	36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1	미룡동	577-44	전	26	26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2	미룡동	577-45	대	24	24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3	미룡동	578-2	도	23	23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4	미룡동	578-3	답	33	33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5	미룡동	576-1	전	69	69	장세욱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6	미룡동	595-10	대	4	4	홍순철	군산시미룡동595-2			
37	미룡동	583-3	전	65	65	한용희	고양시주엽동6문촌마을508/1504			
38	미룡동	583-4	전	22	22	한용희	고양시주엽동6문촌마을508/1504			
39	미룡동	656-3	임	38	38	한덕수	군산시나운동155-6롯데303/1001			
40	미룡동	584-3	전	18	18	김만자	군산시나운동345롯데109/906			
41	미룡동	800-2	답	8	8	김점덕	군산시문화동898-16			
42	미룡동	800-5	전	21	21	홍양성외1	군산시미룡동602			
	소계				1,296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43	미룡동	800-6	대	21	21	손영민	군포시대야미동496-4			
44	미룡동	800-15	대	2	2	김점덕	군산시문화동898-16			
45	미룡동	800-16	전	2	2	김점덕	군산시문화동898-16			
46	미룡동	579-2	도	46	46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47	미룡동	568-1	도	46	46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48	미룡동	579-4	답	114	114	이준복				
49	미룡동	572-3	전	25	25	차종선	성남시분당구금곡동143청솔마 을703-1002			
50	미룡동	580-3	답	104	104	이영세	군산시개정면문화리304			
51	미룡동	577-47	대	33	33	서용석	군산시미룡동577-39			
52	미룡동	598-1	전	13	13	유영애	군산시조촌동758-2동산연립라 동221호			
53	미룡동	802-11	대	30	30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4	미룡동	802-14	대	96	96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5	미룡동	802-2	도	194	194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6	미룡동	802-6	답	81	81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7	미룡동	802-8	답	49	49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8	미룡동	803	답	43	43	고운영	군산시월명동4-7			
59	미룡동	588-3	전	27	27	김동규	군산시나운동100-11롯데202/401			
60	미룡동	593-6	전	11	11	김동규	군산시나운동100-11롯데202/401			
61	미룡동	540-4	답	5	5	김현숙	서울송파구가락동95가락동부센 트리빌103/2202			
62	미룡동	643-3	도	19	19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3	미룡동	654-2	전	58	58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4	미룡동	654-10	전	5	5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5	미룡동	654-11	전	7	7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66	미룡동	655-2	전	2	2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7	미룡동	655-6	전	38	38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68	미룡동	594-3	도	128	128	최영자	군산시명산동21-7			
69	미룡동	594-4	전	3	3	최영자	군산시명산동21-7			
70	미룡동	595-1	전	9	9	최길택외1	군산시구암동333-1세풍아파트 105/501			
71	미룡동	595-7	도	165	165	최영자	군산시명산동21-7			
72	미룡동	산58	임	84	84	한덕수외1	군산시나운동155-6롯데303/1001			
73	미룡동	656-3	임	38	38	김원준	서울동작구대방동502현대101/ 2201			
74	미룡동	571-4	대	5	5	김선희	군산시나운동155-5대우아파트 101/1002			
75	미룡동	571-6	전	22	22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76	미룡동	571-7	전	90	90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77	미룡동	556-4	답	57	57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78	미룡동	562-5	전	44	44	김이권	군산시미룡동563-1			
79	미룡동	596-5	대	38	38	박영수	군산시미룡동596-2			
80	미룡동	555-4	대	35	35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81	미룡동	834-38	대	4	4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82	미룡동	802-11	대	2.56	2.56	장현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0우성 아파트127/1105			
83	미룡동	575-4	답	30	30	박기수	군산시미룡동568-2			
84	미룡동	568-18	대	22	22	이신기	군산시평화동65-18			
소계					1,847.56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85	미룡동	802-13	대	38	38	이순이	군산시미룡동802-5			
86	미룡동	573-5	도	3	3	강효식	군산시회현면대정리166			
87	미룡동	660-17	전	24.24	24.24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암연립주택다동101			
88	미룡동	660-18	전	4.54	4.54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암연립주택다동101			
89	미룡동	660-19	전	0.3	0.3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암연립주택다동101			
90	미룡동	660-20	전	13.63	13.63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암연립주택다동101			
91	미룡동	660-17	전	24.24	24.24	심상곤	군산시구암동364-1			
92	미룡동	660-18	전	4.54	4.54	심상곤	군산시구암동364-1			
93	미룡동	660-19	전	0.3	0.3	심상곤	군산시구암동364-1			
94	미룡동	660-20	전	42.72	42.72	심상곤	군산시구암동364-1			
95	미룡동	660-17	전	24.24	24.24	김명부	군산시조촌동903-2현대아파트102/708			
96	미룡동	660-18	전	4.54	4.54	김명부	군산시조촌동903-2현대아파트102/708			
97	미룡동	660-19	전	0.3	0.3	김명부	군산시조촌동903-2현대아파트102/708			
98	미룡동	660-20	전	42.72	42.72	김명부	군산시조촌동903-2현대아파트102/708			
99	미룡동	597-3	대	44	44	김우성	수원시권선구서둔동371센트라우스 103/1303			
100	미룡동	552-1	도	17	17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1	미룡동	552-2	전	12	12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2	미룡동	554-1	도	13	13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3	미룡동	554-2	대	81	81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4	미룡동	555-1	도	43	43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5	미룡동	556-1	도	66	66	홍동식	군산시나운동금호타운101/201			
106	미룡동	416-18	대	57.4	57.4	박종예순	군산시미룡동주공3차304/501			
107	미룡동	661-1	도	361	361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08	미룡동	668-18	도	725	725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09	미룡동	641-1	도	11	11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0	미룡동	646-1	도	10	10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1	미룡동	656	전	17	17	한덕수	군산시나운동155-6롯데303/1001			
112	미룡동	656-1	도	493	49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3	미룡동	659-8	도	34	34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4	미룡동	660-1	도	33	3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5	미룡동	660-2	도	72	72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6	미룡동	660-3	도	45	45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7	미룡동	660-4	도	63	6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8	미룡동	660-5	도	165	165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9	미룡동	660-6	도	454	454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20	미룡동	660-12	도	43	4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21	미룡동	660-13	도	82	82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22	미룡동	660-1	도	3.27	3.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 트107/1905			
123	미룡동	660-2	도	7.18	7.18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 트107/1905			
124	미룡동	660-3	도	4.54	4.54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 트107/1905			
125	미룡동	660-4	도	6.27	6.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 트107/1905			
126	미룡동	660-5	도	16.54	16.54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 트107/1905			
	소계				3,206.51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27	미룡동	660-6	도	45.36	45.36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8	미룡동	660-12	도	4.27	4.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9	미룡동	660-13	도	8.18	8.18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0	미룡동	660-17	전	7.27	7.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1	미룡동	660-18	전	1.36	1.36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2	미룡동	660-19	전	0.09	0.09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3	미룡동	660-20	전	4.09	4.09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4	미룡동	660-7	전	5.27	5.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5	미룡동	660-8	전	4.63	4.63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6	미룡동	660-9	전	3.18	3.18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7	미룡동	562-6	도	7	7	김이권	군산시신평동3620-8			
138	미룡동	643-4	도	17	17	서문영	군산시삼학동811대우아파트101/403			
139	미룡동	801-6	답	20	20	고운영	군산시월명동4-7			
140	미룡동	801-2	도	281	281	고운영	군산시월명동4-7			
	소계				408.7					
	합계				6758.77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미룡동		펌프장		3.84m2	군산시				
2	미룡동	568-4	가옥		64.96m2	이신기	군산시평화동65-18			
3	미룡동	595-9	가옥		69.0m2	홍순철	군산시미룡동595-2			
4	미룡동	596-2	가옥		79.5m2	박영수	군산시미룡동596-2			
			화장실		1.5m2					
			담장		6.4m2					
5	미룡동	597-1	가옥		60.75m2	손춘자	군산시미룡동597-1			
			화장실		5.75m2					
			담장		16.5m2					
6	미룡동	800-5	담장		27.75m2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삼양레이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산북동	945-3	전	34	34	군산시			
2		946-5	전	341	341	"			
3		947-6	전	103	103	"			
4		922-139	임	9	9	군산시외1인 (김귀식)	옥서면 선연리 33	축협,농협	가압류
5		922-140	대	284	284	군산시			
6		922-142	대	145	145	군산시외1인 (김귀식)	옥서면 선연리 33	축협,농협 수산업,새마을금고	가압류
7		922-144	전	52	52	"	"	"	가압류
8		922-146	전	236	236	국(재정경제원)			
9		922-152	전	30	30	군산시			
10		922-149	도	176	176	국(재정경제원)			
11		922-151	전	61	61	"			
12		922-148	전	18	18	군산시			
13		922-96	도	10	5	국(재정경제원)			
14		922-103	도	311	4	"			
15		922-47	도	393	21	"			
16		922-163	대	40	40	"			
17		922-162	전	190	190	국(재무부)			
18		922-156	전	134	134	군산시			
19		922-165	전	156	156	국(재무부)		김영식	임대
20		922-154	전	139	139	군산시			
21		922-158	임	451	451	"			
22		922-160	전	148	148	"			
23		852-1	대	37	37	"			
24		853-3	대	293	293	군산시외1인	산북동 갈마경노원외1인		
		합계	24필	3,791	3,107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삼양레이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순 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922-140	대	건물	스레트	24.38㎡			
2		922-141	대	건물	스레트	12.53㎡			
3		922-140	대	담장	블럭	23.12㎡			
4		922-141	대	담장	블럭	7.42㎡			
5		922-140	대	나무	향나무	5주			
6		922-146	전	건물	스레트	60.76㎡			
7		922-146	전	담장	블럭	19.20㎡			
8		922-146	전	나무	향나무	1주			
9		922-146	전	나무	감나무	1주			
10		922-151	전	건물	스레트	46.12㎡			
11		922-46	전	건물	스레트	5.60㎡			
12		922-151	전	나무	살구나무	1주			
13		922-151	전	나무	대추나무	3주			

군산시 공고 제2009-647호

공 고

1. 군산시 오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일
군 산 시 장

가. 정비구역 지정

①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신설	군산시 오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군산시 오룡동 861-1번지일원	19,455.8	

② 사업시행계획서 주요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나)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 (라) 기타 시행규정(정비사업명칭, 시행년도 및 시행자, 국·공유지조서 등)

③ 공람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④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군산시청 건축과

⑤ 관련도서 열람 : 군산시청 건축과 비치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450-4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09-599호

공 고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종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안 제12조, 4항)
- 다. 녹화계약 대상지역 선정 (안 제23조 1항)
- 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안 제34조)
- 마.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안 제39조)
- 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안 제41조)
- 사. 공원녹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전화063-450-4424, 팩스063-450-639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담당자 추종환
(전화063-450-4424,4533)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 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원” 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공원” 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공원시설” 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
4. “녹지” 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5. “도시지역”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6. “도시녹화계획” 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녹지활용계약” 이라 함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 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단일토지” 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녹화계약” 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수립 등

제4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 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고 인구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 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 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

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 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 (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 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렛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2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대상토지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③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전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별표 4의 녹지활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전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 (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제16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7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8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7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23조 (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4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 담을 제거하고 웬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물주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제초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회를 둔다.

② 주민협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6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회를 통하여 별표 5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6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 하도록 한다.

제28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9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 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제34조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36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7조 (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8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제39조 (공원점용허가)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공원점용허가)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②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을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

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조성계획 및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 가능.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 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마. 건축물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이내)일 것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쇠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 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 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허가기준일 현재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0조 (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의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의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일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 할 것

아. 산업단지주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 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48조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1조 (허가기간) ① 시장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39조 4항3호 및 40조1항4호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③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점용료 등) 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때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건립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 (점용료 면제 등) 시장은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44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5조 (점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원상회복 등) ① 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장 공원위원회

제4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국장 및 건설교통국장 으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3.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50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5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 1)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 2)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 3) 동 주민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

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 철로변 녹화

-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라. 주차장 녹화

-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한다.

-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

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바. 가로변 녹지대 조성

- 1) 가로변의 유희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 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지율을 높인다.
-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 8) 교차로 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사. 비포장 확대 및 투수성 포장

-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9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 대회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한다.
-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제12조 관련)

구분	토 지 여 건	고 려 할 사 항
우 선 대상지	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은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위의 1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지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	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2. 수림지, 초지,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단,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별표 4】

녹지활용계약서(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갑”이라 정하고, 군산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 구역의 표시) 계약토지 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군산시 ○○○읍면동	○○○-○	○○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당해 토지를 시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 개설방지를 위한 웬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 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을) 군 산 시 장 (인)

【별표 5】

녹화계약서(제26조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군산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군산시 OO읍면동 OO번지의 OO필지 000㎡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녹화계약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0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0그루 이상, 관목 0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연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00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군 산 시 장

(인)

[별표6]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42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용요율
1. 전주·전선·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가의 1000분의25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 (공동구의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5.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기타 산업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점용면적에 개별 공시지가가의 20/1000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점용면적에 개별 공시지가가의 25/1000단,토석 의채취는 점용면적에 (채취량 × m ² 당가격) 을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25
7.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가의 1000분의25
8.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 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가의 1000분의25
9. 물품판매, 사진촬영	m ² 당/1,800원

비고

1.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군산시 공고 제2009-632호

공 고

군산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2008. 2. 4 조례제800호) 2009년 1월부터 시행함에 있어 국가수호를 위하여 지대한 위훈을 세운 무공수훈자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미포함 되어 있어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1조(목적) 내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9. 2. 6일 일부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삽입된 법률명 정정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에 무공수훈자를 추가함
-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2항 내용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를 “제6호, 제8호에”로 수정(제7호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063-450-4311, 팩스063-450-64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자 김순진 (전화063-450-4316,4317)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내용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2항 내용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6호,제8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공헌 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 자’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제3조(지원대상) (생 략) 1. (생 략)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3. (생략)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제6호, 제8호에 ----- ----- 3.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09-646호

공 고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가. 그 간 1995. 1. 19일 제정되어 공무원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여 왔으나
- 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으로 시·군에 면책심의회를 두고 지방 자치단체의 규정을 정하도록 함
- 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감경 또는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도입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군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전화 : 063-450-4217, FAX : 063-450-433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63-450-42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

군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9-656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사항(2009. 2. 6)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라 현행규칙의 일부 조문 각호 변경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주요내용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별표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보완
- 제13조 면접시험기준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신설

○ 인 용 조 항 변 경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인 용 조 문	
		개 정 전	개 정 후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1항	제17조제1항제2호	- - - 제3호
	제4항	제17조제1항제3호	- - - 제4호
	제5항	제17조제1항제6호	- - - 제7호
	제6항	제17조제1항제7호	- - - 제8호
	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 - - 제9호
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 - - 제6호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 제한)	-	제17조제1항제10호	- - - 제11호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제3항	제29조제6호	- - - 제5호
별 표 8 (특별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비고1	제17조제1항제3호	- - - 제4호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5조제5항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조제6항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를 “영 제1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5조제7항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중 “영 제17조제1항제10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영 제29조제6호”를 “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비고1 란 중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u>수급자증명서</u>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u>
6	<u>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u>	<u>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 제 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u>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구조문 대조표

현	개 정 안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삭제 95.09.16>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 ----- ----- ----- ----- ----- ----- ----- ----- -----.

현행	개정안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 ----- ----- ----- -----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 ----- ----- ----- -----.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 ----- ----- -----.
⑧<삭제 2004.12.30>	
⑨(생략)	⑨(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생략) ②(생략)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 ----- ----- -----.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현행					개정안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승진 시험	비 고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제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 에 한함	1	<u>주민등록표 초본 1통</u>	사구 읍면동장 발행
2	<삭 제>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u>주민등록표 초본 1통</u>	○		사구 읍면동장 발행	3	자격증 또는 면허 증서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삭 제>				4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삭 제>				5	<u>수급자증명서</u>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u>
6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6	<u>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 가유공자증</u>	<u>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u>
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7	<u>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u>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8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 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에 규 정된 취업보호대 상자에 한함			
9	<u>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u>	○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함			
10	시험요구서 1부		○				

현행	개정안
[별표 8]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표 생략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생략) 3. (생략) < 신 설 >	[별표 8]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표 현행과 같음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 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